#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농협은행

2. 조치일 : 2018.11.26.

3. 조치내용

| 대 상 | 내 용 |
|---|---|
| 기 관 | 개선 2건 |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가상통화 관련 의심거래 추출기준 운영 불합리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금융정보분석원, 2018.1.30.) 제3절의 '주요 의심거래 유형'을 반영하여 가상통화와 관련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운영중이나

가상통화 관련 의심거래 추출기준 설계시 일부 오류 등으로 ① 일부 추출기준은 전체 가상통화 취급업소 계좌가 아닌 실명확인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 계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고, ② 다른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의심거래 추출기준 적용대상에서 누락되어 의심스러운 거래가 추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명확인서비스 계약을 미체결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포함하여 모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의심거래 추출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2) 가상통화 관련 의심거래보고 검토 업무 불합리**

2017.6.1.~2018.3.23. 기간 중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외환 거래 신고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송금을 시도한 거래를 포함한 가상통화 구입 목적의 해외 송금거래를 취소 조치하고도

의심거래 보고여부의 검토 주체 및 방법 등을 정한 업무처리절차가 미비하여 의심거래 보고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가상통화 구입 목적의 해외 송금거래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여부에 대하여 적시에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